

2026년 조총환 · 양건 SPA형사소송법 정오표(초판기준)

-개정 형사소송법 · 형사소송규칙 반영 -

[제1권]

p.236

08번 해설 ①과 정답을 아래 내용으로 수정

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(국선변호인 선정사유) 제1호의 ‘피고인이 구속된 때’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,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(대판 2024.5.23, 2021도6357 전원합의체). -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‘피고인이 구속된 때’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.

정답 ① ⇨ 정답없음

p.527

01번 해설 ②와 정답을 아래 내용으로 수정

해설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(국선변호인 선정사유) 제1호의 ‘피고인이 구속된 때’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,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(대판 2024.5.23, 2021도6357 전원합의체). -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‘피고인이 구속된 때’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.

정답 ④ ⇨ ②④

p.561

(2) ④ 아래에 추가

📌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(규칙 제134조의 14 제1항: 2025.9.1.신설).

📌 법 제294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(규칙 제134조의 14 제2항: 2025.9.1.신설).

📌 재판장이 열람·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,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(규칙 제134조의 14 제3항: 2025.9.1.신설).

p.561

⑥을 아래 내용으로 대체

⑥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9조의 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(제294조의 4 제3항: 2025. 3. 18. 개정)

p.561

⑥ 내용 아래

🔴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하면 허가하여야 한다. (x) ⇨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하면 허가하여야 한다. (○: 원칙)

p.561

⑦ 내용 아래에 추가

🔴 재판장이 법 제294조의 4 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,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(규칙 제134조의 14 제4항: 2025.9.1.신설).

p.561

⑧ 추가

⑧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(제294조의 4 제5항: 2025. 3. 18.신설).

p.561

⑧을 ⑨로 수정하고, (제294조의 4 제6항) ⇨ (제294조의 4 제7항)

[제 II 권]

p.90

신청방식

2.의 조문을 수정

2. ~ (규칙 제132조) ⇨ (규칙 제132조 제1항)

p.90

신청방식

3. 4. 추가

3.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(동조 제2항: 2025.2.28.개정).

4.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(동조 제3항: 2025.2.28.개정).

p.90

신청방식

기존 3.~8.을 5~10으로 수정

p.93

㉔ ㉕ 추가

㉔ 제3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·녹화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(동조 제4항: 2025. 2. 28.신설).

p.120

피해자의 정보권/㉓을 아래 내용으로 대체

㉓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(제294조의 4 제3항:2025.3.18.개정).

㉔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(제294조의 4 제5항:2025.3.18.신설).

기존㉔를 ㉕으로 하고, (제294조의 4 제5항을 제6항으로 수정)

기존㉕을 ㉖로 하고, (제294조의 4 제6항을 제7항으로 수정)

p.121

9. 내용 아래에 ㉗ 추가

㉗ 제294조의 5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(규칙 제134조의 13 제3항: :2024.12.31.신설).

p.145

㉚ ~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(동조 제4호)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

㉚ ~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법 제29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(동조 제4호: 2025.2.28.단서 신설).

p.145

㉔ 추가

㉔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법원은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(규칙 제144조 제3항: 2025.2.28.신설).

[제III권]

p.114

일부개정 2025.3.18. 법률 제20796호

p.157

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3. 18.>

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3. 18.>

⑤ ⇨ ⑥

⑥ ⇨ ⑦

p.179

일부개정 2025.2.28. 대법원규칙 제3184호

일부개정 2025.9.1. 대법원규칙 제3225호

p.203

제132조 [증거의 신청]

①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25. 2. 28.]

p.206

제134조의 8 제4항 신설

④ 제3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·녹화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5. 2. 28.>

p.207

제134조의14 신설

제134조 14 [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]

① 법 제294조의 4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사건번호, 사건명
2.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
3.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
4.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

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294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
③ 재판장이 열람·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,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재판장이 법 제294조의 4 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,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5. 9. 1.]

p.208

제144조 제1항 제4호 단서 신설

다만,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법 제29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.(신설 2025. 2. 28.)

p.209

제144조 제3항 신설

③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법원은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(신설 2025. 2. 28.)